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제 정	2008.01.01.	개 정(38)	2022.10.28.
개 정(1)	2008.04.01.	개 정(39)	2023.05.23.
개 정(2)	2008.10.30.	개 정(40)	2023.07.20.
개 정(3)	2008.12.09.	개 정(41)	2023.07.31.
개 정(4)	2008.12.18.	개 정(42)	2023.09.12.
개 정(5)	2009.02.04.	개 정(43)	2025.01.17.
개 정(6)	2009.03.02.	개 정(44)	2025.12.22.
개 정(7)	2009.04.01.	개 정(45)	2026.04.01.
개 정(8)	2009.08.31.	개 정(46)	2026.06.01.
개 정(9)	2009.09.21.		
개 정(10)	2009.10.01.		
개 정(11)	2010.03.23.		
개 정(12)	2010.09.15.		
개 정(13)	2010.12.02.		
개 정(14)	2011.04.29.		
개 정(15)	2011.10.21.		
개 정(16)	2013.08.01.		
개 정(17)	2013.11.01.		
개 정(18)	2014.02.24.		
개 정(19)	2014.05.22.		
개 정(20)	2014.12.19.		
전부개정(21)	2015. 8. 3.		
개 정(22)	2015.10.01.		
개 정(23)	2016.10.10.		
개 정(24)	2017.04.05.		
개 정(25)	2017.07.04.		
개 정(26)	2017.09.29.		
개 정(27)	2018.05.04.		
개 정(28)	2018.10.08.		
개 정(29)	2019.05.27.		
개 정(30)	2019.10.07.		
개 정(31)	2020.03.31.		
개 정(32)	2020.06.24.		
개 정(33)	2020.09.14.		
개 정(34)	2021.06.16.		
개 정(35)	2021.12.28.		
개 정(36)	2022.05.23.		
개 정(37)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에 따른 보증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시기)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조건변경 포함)하는 때에 받는다. 다만, 「개인보증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은 금융기관이 주채무를 실행하는 때에 받는다. (개정 2020.06.24., 2021.12.28.)

제3조(산정방법) ① 보증료 등은 대상금액에 해당 요율과 대상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 366)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보증서발급일과 주채무실행일이 다른 위탁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의 보증료는 보증서발급일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10.28.)

③ 보증료 등의 산정 결과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2.10.28.)

제4조(대상금액) ① 「개인보증규정」 제7조에 따른 개별보증 방식의 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대상금액은 보증잔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보증은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06.24., 2021.12.28.)

② 근보증 방식의 보증료 대상금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에 따른 예상 보증잔액을 보증료의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료율) ① 보증료율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보증료율과 차등보증료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인보증(전·월세자금보증 제외)의 경우에는 기준보증료율과 차등보증료율의 합이 연 0.05%미만이면 보증료율은 최저보증료율인 연 0.05%로 하고, 전세자금보증은 기준보증료율과 차등보증료율의 합이 연 0.02%미만이면 보증료율은 최저보증료율인 연 0.02%로 하며, 월세자금보증은 최저보증료율인 연 0.02%를 적용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기준보증료율과 차등보증료율의 합이 연 0.02%미만이면 보증료율은 최저보증료율인 연 0.02%를 적용한다. (개정 2017.07.04., 2019.05.27., 2020.06.24., 2021.06.16., 2023.07.31., 2026.04.01.)

② 개인보증 상품 중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징검다리 특례전세자금보증,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 정책서민금융이용자 특례전세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주택도시기금 청년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 포함), 영세 자영업자 특례전세자금보증, 부분분할상환약정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구조전환 목적의 정책모기지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의 경우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05.27., 2019.10.07., 2020.09.14., 2021.06.16., 2022.09.01., 2022.10.28., 2023.05.23.)

③ 삭제 (2023.07.31.)

④ 삭제 (2023.07.31.)

⑤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보증료율을 일부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27., 2022.10.28.)

제6조(보증료율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보증료율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08.)

1. 집단승인 방식의 전세자금보증 또는 중도금보증

2. 공사와 보증료 우대 등의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개정 2018.05.04., 2019.05.27. 2022.10.28.)

3. 기 이용중인 중도금보증(전세자금보증 포함)을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구입자금보증 또는 중도금보증을 해지(보증채무이행에 의한 해지 제외)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는 구입자금보증 (개정 2022.10.28.)

4. 삭제 (2026.04.01.)

5. 기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을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개별취급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해지(보증채무이행에 의한 해지 제외)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는 개별취급 중도금보증

6.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급하는 건축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전세자금보증 (개정 2018.05.04., 2019.05.27.)

7. 삭제 (2023.07.31.)

8. 개인보증 피보증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이 자녀양육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고령자, 재난피해가구, 소상공인가구, 노부모부양가구(이하 “우대가구”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06.24., 2025.12.22., 2026.04.01., 2026.06.01.)

9. 삭제 (2020.09.14.)

10. 삭제 (2023.07.31.)

11. 「개인보증규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인터넷보증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설 2017.07.04.)

12.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자가 신청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설 2018.05.04.)

13. 내진 또는 내화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신설 2018.05.04., 2023.07.31.)

14.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설 2018.10.08.)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중도금보증 (신설 2018.10.08., 2023.07.31.)

16.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1주택자로서 동 지침에 따른 연소득(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 배우자 연소득 포함)이 70백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청하는 전세자금보증 (개정 2020.09.14.)

17. 삭제 (2020.09.14.)

18. 무주택 청년 특례전·월세자금보증(주택도시기금 청년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청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설 2020.06.24., 2022.10.28.)

19.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신설 2022.10.28.)

20.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신설 2023.05.23.)

21. 삭제 (2026.04.01.)

22. 녹색건축물에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 건축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신설 2026.06.01.)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적용요율은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르며,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24., 2023.07.31.)

제7조(보증료율의 차등화) ① 보증료율은 보증구분별로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8.05.04., 2023.07.31.)

②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은 각 보증의 승인 당시 신용도를 해당 보증의 전액 해지 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채무인수의 경우 개인보증은 당초의 신용도를 계속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7.31.)

③ 삭제 (2023.07.31.)

④ 삭제 (2023.07.31.)

제8조(대상기간) ① 보증료는 보증을 한 날(위탁보증은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개인보증규정」 제12조에 따른 보증기한(보증기한이 휴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할 수 있다)까지 받는다. 다만, 보증을 한 날에 해당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징수기간을 1일로 계산하여 받는다. (개정 2017.07.04., 2021.12.28.)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신설 2020.06.24.)

제9조(징수 및 관리방법) ① 보증료는 일시납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② 분할납부의 세부 내용 및 보증료의 관리 방법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현가할인) ① 보증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보증료에 대하여

현가할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7.31.)

② 현가할인 산식은 “ $1/(1+\text{적용이자율})^{(\text{보증기간}-1)}$ ” 로 하며, 적용이자율은 보증부대출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담당임원이 결정한다.

제11조(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① 연체보증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받는다.

1. 대상금액 : 받아야 할 날에 받지 못한 보증료
2. 연체보증료율 : 연 10%
3. 대상기간 :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받은 날(보증해지시에는 보증해지일, 보증채무이행시에는 보증채무이행일의 전일)의 전일까지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보증 고객이 미납보증료를 완납하고 대출 및 보증을 정상화하는 경우 연체보증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25.12.22.)

② 추가보증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받는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제외한다. (개정 2020.06.24.)

1. 대상금액 :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않은 보증잔액 (개정 2023.09.12.)
2. 추가보증료율 : 제5조에 따른 최종 보증료율에 0.3%p를 가산한 요율 (개정 2019.10.07.)
3. 대상기간 : 보증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주채무 상환일(보증채무이행시는 보증채무이행일) 전일까지. 다만, 보증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보증료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3.09.12.)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보증 고객이 미납보증료를 완납하고 대출 및 보증을 정상화하는 경우 제2호의 가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5.12.22.)

③ 삭제 (2020.03.31.)

제12조(환급) ①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보증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한다. (개정 2022.05.23., 2023.09.12.)

② 보증서 발급일과 주채무 실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주채무 실행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신설 2022.05.23.)

③ 보증기간 내에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개정 2020.06.24., 2022.05.23.)

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한다. (개정 2021.06.16., 2022.05.23., 2023.07.20.)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증신청인이 보증부대출 및 신용보증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 환급한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취소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증신청인이 보증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 환급한다. (신설)

2020.06.24.)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06.24., 2022.05.23., 2023.09.12.)

1. 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계획일정을 반영하여 보증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로서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보증채무 이행(일부이행 및 거절 포함)을 원인으로 해지된 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당초 징수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환급한다. (개정 2021.06.16., 2022.05.23.)

⑦ 보증료의 환급절차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5.23.)

제13조(기일관리) 보증료와 관련된 기일관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감면) 재해,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료 일부, 연체보증료 전부 및 추가보증료 중 제11조제2항제2호의 가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3.31.]

부 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내규에서 종전의 보증료 등의 운용 규정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조항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 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 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 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 16호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보증 접수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 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보증료율의 조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보증료율의 조정) 제1항 제9호 및 [별표 1] 전세자금보증 ③의 개정규정은 부분분할상환에 대한 전세자금보증특례 상품 출시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1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보증료율의 조정) 제1항제2호, 제19호 및 [별표 1] 개정규정 중 구입 자금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이 규정은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실행건(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채무인수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인보증 보증료율 표 (최저 보증료율 : 0.05%, 전·월세자금보증의 경우 0.02%) (개정 2022.10.28., 2023.05.23., 2023.09.12., 2025.12.22., 2026.04.01., [2026.06.01](#))

보증구분	기준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의 조정대상				차등보증료율
전세자금보증			① 「사업자보증규정」 제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 및 공사와 보증료 인하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시행자 또는 시공자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보증 : -0.10%p				해당없음
			②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집단승인 방식의 보증 : -0.05%p				
	임차보증금	요율	③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급하거나 보증료 우대 등의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 -0.10%p				
	1억원 이하	0.06%	④ 인터넷보증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 -0.05%p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0.08%	⑤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자가 신청하는 전세자금보증 : -0.10%p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10%	⑥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 -0.10%p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0.12%	⑦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1주택자로서 동 지침에 따른 연소득(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 배우자 연소득 포함)이 70백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청하는 전세자금보증 : +0.20%p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0.14%	⑧ 우대가구(저소득자,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제외) : -0.10%p				
	5억원 초과	0.20%	⑨ 우대가구(저소득자, 재난피해가구) : -0.20%p				
			⑩ 우대가구(자녀양육가구)				
			자녀수(태아포함)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우대요율	-0.05%p	-0.10%p	-0.20%p	

보증구분	기준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의 조정대상	차등보증료율															
구입자금보증	<table><tr><th>주택유형</th><th>요율</th></tr><tr><td>아파트</td><td>0.15%</td></tr><tr><td>기 타</td><td>0.20%</td></tr></table>	주택유형	요율	아파트	0.15%	기 타	0.20%	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0.10%p	○ 신용등급별 차등 <table><tr><th>신용등급</th><th>차등요율</th></tr><tr><td>1~3등급</td><td>-0.10%p</td></tr><tr><td>4~6등급</td><td>-</td></tr><tr><td>7등급이하</td><td>+0.10%p</td></tr></table>		신용등급	차등요율	1~3등급	-0.10%p	4~6등급	-	7등급이하	+0.10%p
		주택유형	요율																
		아파트	0.15%																
		기 타	0.20%																
	신용등급	차등요율																	
1~3등급	-0.10%p																		
4~6등급	-																		
7등급이하	+0.10%p																		
② 기 이용중인 중도금보증(전세자금보증 포함)을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구입자금보증 또는 중도금보증을 해지(보증채무이행에 의한 해지 제외)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는 구입자금보증	: -0.10%p																		
③ 우대가구(재난피해가구 제외)	: -0.10%p																		
④ 우대가구(재난피해가구)	: -0.20%p																		
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 -0.10%p																		
	⑥ <u>녹색건축물</u>	: -0.10%p																	
중도금보증	일반중도금보증 : 0.4%	① 기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을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개별취급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해지(보증채무이행에 의한 해지 제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개별취급 중도금보증	: -0.10%p	해당없음															
		② 우대가구	: -0.10%p																
	집단중도금보증 : 0.2%	① 아래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 2. 「주택법」상 공공택지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소재 사업장	: -0.07%p																
		②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 및 공사와 보증료 인하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보증	: -0.10%p																
		③ 최근 3년이내 사업자보증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시행자(시공사 및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주택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중도금보증	: -0.10%p																
	④ 기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을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개별취급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해지(보증채무이행에 의한 해지 제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개별취급 중도금보증	: -0.10%p																	

보증구분	기준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의 조정대상	차등보증료율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중도금보증 : -0.10%p ⑥ 우대가구 : -0.10%p	
건축개량자금보증	0.2%	①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급하는 건축·개량자금보증 : -0.10%p ② 우대가구(재난피해가구 제외) : -0.10%p ③ 우대가구(재난피해가구) : -0.20%p ④ 「건축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내진등급기준보다 상향 적용 또는 내진보강하거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개량자금보증 : -0.10%p <u>⑤ 녹색건축물 : -0.10%p</u>	해당없음
임대보증금반환보증	0.6%	① 우대가구 : -0.10%p	해당없음
구상채권회수보증	0.5%	① 우대가구 : -0.10%p	해당없음

- 1) 신용등급은 CSS 등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CSS 미산정시 CB등급 적용
- 2) 우대가구 : 피보증인이 자녀양육가구(단, 1·2자녀가구는 전세자금보증에 한함),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고령자(전세자금보증에 한함), 재난피해가구(전세, 구입, 건축·개량자금보증에 한함), 소상공인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보증료율 적용은 보증실행일 기준. 다만, 집단승인 방식 보증으로 취급하는 경우 기준보증료율의 조정대상(표. 전세자금보증 ①. ②, 집단중도금보증 ①~③인 경우)에 대한 보증료율 적용은 집단승인일 기준
- 4) 중도금보증의 경우 담보취득후 미해지된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보증료 납부기일부터 연 0.4%를 적용함
- 5) 기준보증료율의 조정 대상 중 1주택자로서 연소득 70백만원 초과자 및 우대가구를 제외하고 중복 적용 불가
- 6)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지의 개발과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함

[별표 2] 삭제(2023.07.31.)

[별표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표 (최저 보증료율 : 0.02%) (개정 2022.10.28., 2023.07.20., 2025.01.17., 2025.12.22., 2026.04.01., [2026.06.01.](#))

보증구분		기준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의 조정대상				차등보증료율								
일반				① 우대가구(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재난피해가구 제외) : -0.02%p ② 우대가구(자녀양육가구) <table><tr><td>자녀수(태아포함)</td><td>1자녀</td><td>2자녀</td><td>3자녀 이상</td></tr><tr><td>우대요율</td><td>-0.01%p</td><td>-0.02%p</td><td>-0.03%p</td></tr></table> ③ 우대가구(저소득자, 재난피해가구) : -0.03%p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인이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이 무주택 청년 특례전·월세자금보증(주택도시 기금 청년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 포함)인 경우 : -0.02%p				자녀수(태아포함)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우대요율	-0.01%p	-0.02%p	-0.03%p	해당없음
		자녀수(태아포함)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우대요율	-0.01%p					-0.02%p	-0.03%p							
		LTV	요율													
		70% 이하	0.04%													
70% 초과 80% 이하	0.11%															
80% 초과	0.18%															
특례	전세금 반환 대출 연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택유형	요율													
		아파트	0.13%													
		기 타	0.15%													

- 1) LTV 산식은 “ $LTV = (\text{선순위채권총액} + \text{임대차보증금}) \div \text{주택가격} \times 100$ ” 으로 하며, 산식에서의 용어의 정의 및 주택가격의 평가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2) 우대가구 : 보증신청인이 자녀양육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고령자, 재난피해가구, 소상공인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준보증료율의 조정 대상은 중복 적용 불가
- 4) 보증료율 적용은 보증실행일 기준